**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**

**연구회 운영 시행세칙**

**2014.05.09 제정**

**제1조 (목적) 본 연구회 운영 시행세칙은 정관 제 44조와 제45조에서 규정한 연구회 결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절차를 명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**

**제2조 (연구회 등록절차) 연구회 결성을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절차를 따른다.**

**① 학회 회원은 누구나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구회 설립을 위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.**

**② 연구회 등록을 원하는 회원은 연구회 설립 목적과 참여 회원명단, 연구회 설립 후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.**

**③ 사무국은 제출된 연구회 등록 신청 서류를 상임이사에게 공지하여 상임이사회 개최 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.**

**④ 상임이사회에서는 접수된 연구회 활동계획서를 검토하고, 타 연구회 회장 및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.**

**⑤ 사무국은 심의 결과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.**

**제3조 (연구회 지원) 연구회 지원은 1년 간의 장기 지원과 1회성 지원으로 구분한다.**

**① 장기 지원 관련 사항은 아래 각 호를 따른다.**

**1) 1년간의 장기 지원을 위해 매년 결산시점에 사무국은 각 연구회의 수입 현황을 집계한다.**

**2) 상임이사회는 연도별 연구회 수입 내역을 검토하여 1년 간의 장기 지원 대상 연구회를 선정한다.**

**3) 장기 지원 방식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회 규모에 맞는 지원 방식을 심의 후 적용한다.**

**② 1회성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각 호를 따른다.**

**1) 1회성 지원이 필요한 연구회 임원은 지원 필요 사유와 함께 상임이사회에 지원을 요청한다.**

**2) 상임이사회는 접수된 내역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의한다.**

**제4조 (연구회 의무)**

**① 연구회는 학회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학술대회 참석을 의무화 한다.**

**② 연구회 행사 개최 시 간접비 부담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비율에 따라 납입하는 것을 의무화한다.**

**제5조 (연구회 활동 시 사전 승인 절차)**

**① 연구회 별도의 재무 활동을 위해서는 연구회 임원은 상임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.**

**② 연구회 자체 주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다.**

**제6조 (연구회 해산)**

**① 연구회의 활동이 미비하여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연구회 임원은 연구회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회에 해산 신청을 한다.**

**② 상임이사회는 해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연구회의 해산 여부를 승인한다.**

**③ 연구회에 해당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**

**부칙**

**제7조 본 시행세칙은 2014년 5월 9일 2014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.**

**<별지서식1>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연구회 등록 신청서** | | | | |
| **1. 연구회 명칭** |  | | | |
| **2. 설립목적** |  | | | |
| **3. 활동계획** |  | | | |
| **4. 회 장** |  | | **소속** |  |
| **5. 연락처** | **전화번호** |  | **핸드폰번호** |  |
| **이메일** |  | | |
| **6. 첨부** | **회원명부** | | | |
| **년 월 일**  **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귀하** | | | | |